평택 시 소재 소스 배합기에 상반신 끼임 사망 사고

재해개요

2022년 10월 15일 오전 6시 20분경, 경기도 평택 시에 위치한 SPL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의 앞치마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 기계에 빨려 들어가 상반신이 끼여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.

재해상황

(실제 현장)





재해발생 원인

○ 소스 배합기 안전덮개 개방한 상태로 작업
○ 작업 중 덮개 개방 시 자동으로 기계가 정지되는 안전장치 미 설치(인터록 장치)
○ 2인1조 작업 미 실시

재해예방 대책

○ 소스 배합기에 안전덮개 개방 시 자동으로 기계가 정지되는 안전장치 (인터록 장치) 설치 및 비상정지장치 설치
○ 배합기 1대 당 2인1조 작업 실시(안전을 위해 3인1조 작업 숙고)
○ 근로자 업무량 과중되지 않도록 조정 실시 및 적정 휴식시간 부여
○ 배합기 등 식품가공용 기계에 대한 안전작업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 실시
○ 배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확인된 제품 사용 실시
○ 관리감독자 입회하여 현장 관리감독 실시

2013-교육미디어-1342

재해사례
(배합기)

배합기 가동상태에서 점검 중 끼임

조심조심 코리아
제조업

동물 사료 첨가물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배합기 가동 도중 개방되어 있는 점검구에 작업자가 접근하여 점검 작업 수행 중 신체의 일부가 배합기의 회전날과 점검구 사이에 끼임



재해발생 원인

- 배합기 회전날 접촉위험에 따른 위험방지조치 미실시
 - 점검구(크기 45㎝×45㎝) 덮개가 개방된 상태로 운전
- 점검,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(전원차단) 미실시



안전작업 방법 TIP

1 배합기 회전날 접촉위험에 따른 위험방지조치 실시
- 회전 접촉 위험 부분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고, 덮개 해체 사용 금지
- 덮개를 개방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설비가 정지되는 구조의 연동장치를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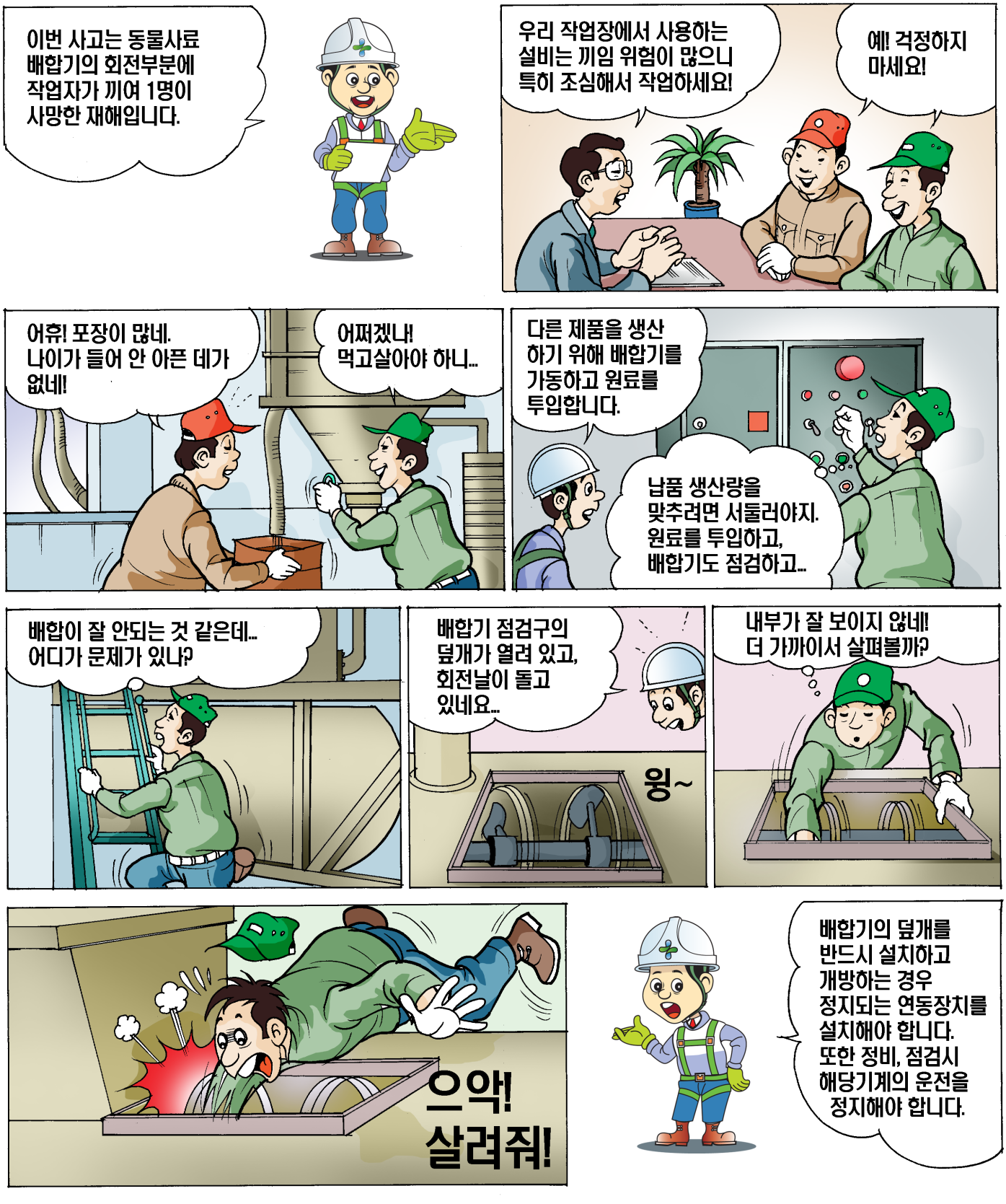
2 점검,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(전원차단) 실시
- 정비·청소·점검 등의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



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

배합기 가동상태에서 점검 중 끼임

점검, 보수 등의 작업시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세요!



참고법령 및 기준

- **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**
 제87조(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방지), 제92조(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등), 제93조(방호장치의 해체 금지)